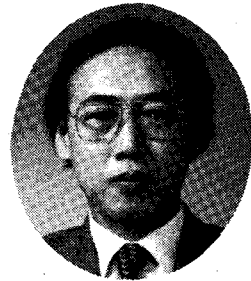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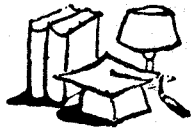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의 힘을 주자는 까닭



朴昌根

〈本會 高문, 環境教育會 회장〉

얼마 전, 환경보호를 잘 해 보자고 쓴, 충고의 글에 「고소」라는 답이 날아와 筆者를 당황하게 하더니, 최근엔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의 힘을 주어, 환경보호를 現場感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글을 「建設環境」지에 썼더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정식으로 청탁받아 쓰는 내 연재의 「글」(時事컬럼)을 事前에 단 한번의 양해나 해명도 없이, 잘라버린 無禮가 있었다. 無知의 所致라 외면하려 했으나 연재 중단의 이유를 묻는 문의와 내 「글」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그 경위를 말한다.

내가 환경보호의 「일」 중에서, 전문적인 환경문제를 대중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그 이전(환경보호의 「일」을 하기 전)에 이 新聞, 저 雜誌에서 10여년동안 편집의 일을 맡아하면서 전문적인 문제일수록, 社會意

識이 깊이 게재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었기 때문이다.

사실, 1969년 내가 책임지고 있었던 月刊「다리」지가 필화사건으로 自進休刊이라는 닳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이 나라에서 비평, 비판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모한 짓인가를 깨닫고, 쫓기듯 日本에 가서는 결코 다시는 글 쓰는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맹서했었다.

그래서, 「朝日新聞」의 M 씨의 권유대로 환경보호의 「일」에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일」 또한 일부 권력남용자, 재력남용자의 허세와 이들의 부추김에 분수를 잃고 허둥대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작업이어서,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고상한 이론, 전문적인 학술 언어로 치장하고 있어, 뭐가 뭔지 모르

는公害를 알아 보기 쉽게 보통의 말로 까발리
자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 열심히 글을 써 환경오염
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환경문제가 단순히 물리, 화학적이거나
생태학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모든 면에 걸쳐 연관지어져 있는 문제라,
나는 그런 문제에 환경을 代入시키고, 환경문
제에 그런 時事를 끼워 맞추기에 애를 썼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과 환경보호」, 「어느
재벌의 비리와 환경문제」, 「대모의 군중심리와
환경」 등 그때 그때 문제가 되는 「문제」와 환
경보호의 「일」을 짝지어 제시했다.

그렇게 15년 동안 글을 쓰고, 그 글들이 모
여 한권, 두권의 책이 된 것이 어느덧 열두권이
라는 부끄러운 흔적이 되었다.

모두가 고상한 글, 점잖은 글만 쓰다가는 결
코, 고상하거나 점잖지 않은 公害는 무엇이 되
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 글의 대개는 제안이며, 제의였다.
꼭 「환경보호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라면」 이라
는 전제로 조금은 時代를 앞서가는 것 같이 보
이는, 또 황당무계 하게 보이는 그런 제안과 제
의를 호소했다.

지금이야 엄연히 「환경청」이 존재하고 있지만,
1975년 겨울의 「중앙일보」주최의 세미나에서 또,
1977년의 「서울시」주최의 세미나에서, 나는 「환
경보호를 전담할 기구」의 창설을 주장했다.

公害를 산업발전의 必然惡 정도로 여기고 있
었던 그때의 내 주장은 한 환경보호주의자의 급
진적인 이상론 정도로 취급 당했지만, 그 Sen-
timentalism이라고 해도 좋을 내 주장은 1980년
사실로 등장한 것을 어쩌랴?

아니, 「환경보호부」가 아닌 「보사부」 외청의
「환경청」에 불만을 품은(?) 權肅杓, 盧隆熙,
盧在植, 朴魯敬, 車喆煥, 洪淳佑 박사님 그리
고 몇몇 선후배 환경인과 나는 1980년 「환경청」
이 창설된 그날 부터 「환경청」이 아니라, 「환
경보호부」여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

그때도, 환경문제에 느긋함을 갖고 있는 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나라에서, 「환경청」이 생긴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쩌자고 한 술 더 뜨는지 모르겠다”
고...

그때의 내 심경은, 이름뿐인 「환경문제 전담
기구」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成長·開發論者나 汚染者들이 공연
히 힘도 못쓸 「환경청」을 앞세워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져 올 것
이... 그런 핑계가 더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2년 6월 KBS T.V의 「일요토론」
시간에, 그 점잖은(?) 자리에서 나는 「환경청」
의 「환경보호부」 설립과 「환경청」에 「司法權」
을 주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간 큰 제안을 한
것이다. 1시간의 방송이 끝난 후 사회자인 이
계익씨는 일요일 아침(9시~10시) 프로인 「일
요토론」은 대통령께서도 시청하는 프로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폭탄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하느
냐? 고 짜증을 보였다.

그러나 함께 자리를 한 朴準翼 전환경청장과
盧在植, 洪淳佑 박사님은 좋은 제안을 냈다며
시원해 했다. 그러나, 그때도 환경보호를 「실험
실용」으로, 「위생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환
경인들과 심지어는 「환경청」의 일부 관리들도
「환경청」의 「部」 승격과 「司法權」 취득(?)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말하자면, 그때 정말, 환경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던 환경인들은 내 제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위치나 여러 이유로 직접적으로 주
장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그런 파격적(?)인 선
언은 그럴듯한 위치도 없고, 여러 이유도 없는
나 같은 자가 서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나는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의
「일」에 있어서 最一線을 맡고 있다고 믿는 環
境管理人에게 司法權을 주어, 보다 빠르게, 능
동적으로, 현장에서 환경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創刊号부터 每週「時事 쉼럼」을 써 주고 있었던「週刊建設環境」紙에, 연재에 따라 7월 13일자로「環境管理人에게 司法權의 힘을…」이라는 題下로 쉼럼을 써 주었으나, 司法權의 뜻을 몰라서였는지? 아니면 環境관리인을 정말 工場의 雇傭人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내「글」을 송두리채 외면했다. 그것도(신문이 나온 날, 每週 내게서 원고를 받아가는 女記者가 “이번 신문에 회장님의 원고가 빠졌다”는 통보를 해 주었을뿐) 事前에 단 한번의 문이나 협의도 없이…

活字 매체가 청탁해서 받은 글을 외면하는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첫째, 國是에 위배되는 내용 둘째, 社會 혼란을 야기할 목적의 내용 셋째, 美風良俗을 해칠 내용 등이다.

그렇다면 내 글의「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의 힘을 주자」는 내용이 國是에 위배되고, 社會 혼란을 야기하며, 美風良俗을 해치는 내용이란 말이나?

어느 환경인이 내「時事 쉼럼」이 빠진 이유를 문의하자, 環境청을 出入하는 그 신문의 某記者는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을 주자고 하는데 그게 될 말이나?”고 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독자의 투고라도 의견은 의견인데, 하물며 청탁해 받은 글의 내용이 매체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한 마디의 의논도 없이 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횡포인가?

記名의 글은 그 글을 쓴 筆者의 사상과 주장을 표현한 글이지, 그 글을 게재하는 매체의 생각을 代筆해 주는 글이 아니다. 그래서 글에는 記名의「글」이 있고, 無記名의 취재의「글」이 있다. 그리고 記名의 글과 매체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당연히 수용되는 것이 언론, 보도의 상식이다.

「환경보호」라면 죽어 지내는 筆者라, 창간호부터 每週 꼬박꼬박 쉼럼을 써 주니까, 아마 筆

자를 편집국의 말단 記者 정도로 생각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전화 한통으로라도 事前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단 말이나?

그래서「建設環境」의 자세를 알고난 후, 쉼럼 연재를 끊었다.

公器로서의 言論의 기본적인 예의도, 상식도 보여주지 못하는 매체에, 글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이점, 그동안 내「時事 쉼럼」을 애독해준「建設環境」의 독자들께서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建設環境」에 쉼럼을 써 주지 않자, 15일 아침 일찌기, 집으로 전화가 왔다.

“어제야, 이번의 無禮를 알게 되어 직원을 크게 꾸짖었다며, 노여움을 풀고 倍前의 도움을 달라”는 專務님의 정중한 해명이었다.

그래서, 여러 형편상「建設環境」에는 더 이상「글」을 쓸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의 無禮를 저지른 者대신에 사과하는 운영 책임자의 고충을 위로했다.

편집책임자로서의 기초적인 公的 本分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또 記者의 무책임한 의견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發行人과 점잖은 간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롱한 것이다.

여기, 「建設環境」지에서 다시 찾아온 문제의 쉼럼 全文을 그대로 옮긴다.

「누가 뭐라고해도 環境관리인은 環境 보전의 最一線 파수꾼이며, 해결사다.

軍隊로 치면, 최전방에서 敵과 대치 하고 있는 第1의 勇士라는 이야기다.

전쟁에는 작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귀신이 곡할 작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전을 수행해줄 勇士가 없으면, 작전은「작전」 그것으로 끝인다.

따라서 전쟁에는 작전을 꾸미는 사령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 보다도 적과 싸워줄 최전방의 勇士가 더욱 중요하다.

오늘의 環境 문제는 이제 단순한 행정적 처리

나, 실험실적 대책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여건의 경우에서는 보이는 敵인 북한 집단과 보이지 않는 적인 환경오염을 같은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적이야, 보이기 때문에 막아낼 여건이 쉽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기에 어려운 조건이 많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을 막고 있는 우리의 환경관리인은, 우리의 一線을 지키고 있는 군인과 같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勇士인 것이다.

그러나 환경관리인에 대한 현실은 어떠한가? 기껏 공장의 廢水處理場이나, 굴뚝에 필요한 雇傭人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大學을 나와, 그 까다로운 국가시험을 치뤄 1~2급 자격증을 얻는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기업에 入社하지만, 그래, 책상이라도 하나 변변한 것이 차례 가는가? 아니, 남들은 「계장」에, 「과장」에, 「부장」에 요령껏 잘도 진급하는데, 우리의 환경관리인은 그 특수직종 때문에, 만년 「환경관리인」으로 취급 당하는 수모를 언제까지 겪어야 할 것인가?

더구나 일부 악덕 기업주를 만나면, 눈가림도 강요 당하게 되고, 소위 쌍벌죄라는 法에 묶여 쇠고랑도 차야 된다.

이래 갖고야, 환경보전이고 뭐고 김 빠지는 일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겐, 희생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겐, 그 일을 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보상이 약속되어야 한다.

아니, 그런 것을 바래 환경보전의 「일」을 택한 것이 아니니, 그런 것은 그만 두고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주어야 한다.

최 일선을 지키는 군인에게 맨손으로 전선을 지키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의 환경관리인에게도 최소한의 무기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창하게, 地位向上이니 權益 옹호니 하는

구호 보다는, 실질적으로 汚染을 막을 수 있게, 힘의 무기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관리인에게는 司法權이 필요 하다!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열차 안에서 떠드는 것 보다,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것 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환경 일선에서 오염과 싸우고 있는 환경관리인에겐 司法權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부 악덕 기업주가 오염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래야, 기다릴 것 없이 그때 그때 오염을 事前 예방할 수 있다.

그래야, 환경을 보전한다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국민이 깨닫게 되어, 환경보전을 생활화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뭐니뭐니 해도 「국토」가 최우선의 조건일 것이다.

「국토」가 있어야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의 조건이 「공기」와 「물」 그리고 「땅」일진데, 그 「공기」와 「물」 그리고 「땅」을 보호하는 환경보전이야 말로 국토 보전이요, 국가보호가 아니겠는가?

국가를 보호하는 일에 司法權을 인식해 할 필요는 없다.

며칠 전, 준 司法權을 갖는 「消費者保護院」이 창설되었다. 분명히 환경문제는 「좋은 상품」 「정당한 가격」 「충분한 애프터서비스」 보다 중요한 문제다.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살아 남느냐?」「죽느냐?」의 문제다.

즉,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司法權은 당연한 권리다.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을 부여해야, 일부 악덕 기업인의 非良心이 꼬리를 감출 것이며, 오염을 현장에서 事前에 막을 수 있다.

혹자는 司法權의 남용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인이 司法權을 남용해 보았자, 환경보전일 뿐이다.

오늘을 民主化의 시대라고 한다. 정치도, 사회도, 학원도 모두가 民主化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모두를 지키는 환경보전에 司法權을 주어, 환경대책의 民主化를 이루지 못할 까닭이 없다.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을 부여해, 환경보전의 당위성에 힘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을 더 빨리, 더 튼튼하게, 더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다.」

(1987. 7. 6.)

以上の 글이다. 이 「글」 어디에 國是를 위배하고, 社會를 혼란시키고, 美風良俗을 저해한 내용이 있는가?

「建設環境」 측은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을 주어야 한다는 내 주장이 너무 앞서가는(?) 제안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분명한 것은 7년전, 「환경청」이 처음 발족되었을 때 정말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인들은 「廳」이 아닌 「部」를 주장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는 「廳」 자체에서도 「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司法權은 순서(?)상 「환경관리인」보다 「環境廳」이 먼저 갖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環境廳」은 司法權 정도가 아니라 「部」가 되어야 하고, 司法權이 없어도 능히, 司法權의 행사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환경관리인에게 먼저 司法權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司法權이라니까, 處罰權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司法權이란 司法警察權으로서, 「조사」「고발」할 수 있는 法的權利를 말한다.

司法權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無禮를 저지른 것 같아 손에 쥐어주듯 자세히 例를 든다면 가령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협오」, 「불안」,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면, 여객전무는 그 승객을 다음 역에서 강제로 下車시켜, 경찰관서에 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여객전무에게 司法權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다만 「주의」의 책임만

있어, 상대가 是非를 걸어오면 是非에 말릴 수 밖에 없다.

같은 경우로 만약 A이라는 환경관리인이 汚染行爲者를 발견했을 때, 그 관리인에게 司法權이 없으면 다만 「주의」「충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충고」만 해도 네가 뭐데? 남의 일에 참견이나? 고 딱살 잡힐 수도 있다. 물론 상대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아볼 수도 없다.)

그러나 A라는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이 있다면, 汚染行爲者를 가까운 경찰관서로 同行시켜, 「고발」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書面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 받아, 기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또 그렇다면 모든 環境人에게 司法權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 비양 거릴지 모르겠으나 汚染을 잘 알고, 또 汚染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들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국가가 인정하는 「管理者」다.) 환경관리인에게만 司法權을 주면 된다.

司法權은 대단한 權利가 아니다. 다만 오늘 날과 같은 個人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社會에서, 加害者를 適法으로 따지고, 고발할 수 있는 모니터制라고 생각하면 된다.

「司法權」, 「司法權」하니까, 司法權이 대단히 겁나는 것인줄 아는 모양인데, 司法權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아니, 정말 겁내야 할 것은 汚染이며, 無知다.

분명히 말하건대, 「환경관리인」은 결코 工場의 단순한 雇傭人이 아니다! 汚染의 현장에서 汚染을 직접 막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다.

그런 희생적인 우리의 환경관리인에게, 司法權을 주자는 것이 무엇이 험롭고, 배가 아프다고 외면하는가?

環境保護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발전을 지키자는 使命이다.!

그런 使命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環境保護 그 자체가 수단이고 목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둔다.